

-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-

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

[문화복지위원회]

충 청 남 도

목 차

1. 저출산보건복지실

< 일 반 회 계 >

○ 출산보육정책과	-----	3
○ 사 회 복 지 과	-----	9
○ 보 건 정 책 과	-----	17

2. 문화체육관광국

< 일 반 회 계 >

○ 충 남 도 서 관	-----	39
-------------	-------	----

1. 저출산보건복지실

출 산 보 육 정 책 과

출산보육정책과

1.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	6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(성립전)	정책사업	아동복지 증진
	단위사업	아동희망 프로젝트 추진
	세부사업	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
	통 계 목	자치단체경상보조금 (308-0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 목적 : 미세먼지 사태 지속에 따른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 조성
- 사업 위치 : 천안시 등 15개 시군
- 사업 기간 : 2020. 1. 1. ~ 2020. 12. 31.(단년도 사업)
- 예 산 액 : **90,906천원(국비)**
- 사 업 량 : 441대
- 사업시행방법 : 시군 시행
- 사업시행주체 : 천안시 등 15 시장·군수
- 사업 내용 :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월 임대료 지원
- 지원근거 :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

제59조(비용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

□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산출액(총사업비 기준)	비 고
산출 기초	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: 181,812천원 ○ 세부산출내역 · 소형 공기청정기(40㎡이하) 임대비 지원 : 343대 × 30,000원 × 12개월 = 123,480천원 · 대형 공기청정기(40㎡초과) 임대비 지원 : 98대 × 50,000원 × 12개월 ≒ 58,332천원 ※ 도비 27,272천원 제2회 추경 반영 예정	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20년			향후투자	비고
			기정예산(A)	1회추경(B)	증감(B-A)		
계	181,812	0	0	181,812	181,812	0	신규
국 비	90,906	0	0	90,906	90,906	0	국고
도 비	27,272	0	0	27,272	27,272	0	
시군비	63,634	0	0	63,634	63,634	0	
기 타	0	0	0	0	0	0	

* 보조율 : 국비 50%, 도비 15%, 시·군비 35%

□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잔액 (C=A-B)	집행률 (D=B/A)	다음연도 이월액	비 고
2019년	55,250			%		정산중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물품정수 취득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	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
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2020년 (2020~2024)	-	-	-	-	-	-	-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저출산보건복지실	출산보육정책과	아동복지팀	이태규 (행) 2610	임재란 (행) 4545	이범희 (행) 2614

사 회 복 지 과

사 회 복 지 과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복지시설 방역 물품 지원 | 12 |
| 2. 생활지원비 지원 | 14 |

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(성립전)	정책사업	사회복지 종합지원
	단위사업	사회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
	세부사업	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
	통 계 목	자치단체경상보조금 (308-0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 목적 : 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(입소자) 감염증 전파를 막음으로써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사회 전파 예방
- 사업 위치 : 15개 시군
- 사업 기간 : 2020. 3. ~ 2020. 12.(단년도 신규사업)
- 예 산 액 : **619,663천원**(국비)
- ※ 증감 사유 :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성립전 예산, 예비비 편성
- 사 업 량 : 마스크 285,198개, 손소독제 119,266개(시군에서 탄력적으로 조절 가능)
- 사업시행방법 : 시군 시행
- 사업시행주체 : 15개 시군
- 사업 내용 : 복지시설 방역물품(마스크, 손소독제) 지원
- 지원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조·제66조,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7조

감염병예방법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

감염병예방법 제66조(시·도가 보조할 경비)시·도(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)는 제64조에 따라 시·군·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.

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7조(시·도의 보조 비율) 법 제66조에 따른 시·도(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)의 경비 보조액은 시·군·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.

□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산출액(총사업비 기준)	비 고
산출 기초	■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: 1,239,326천원 ○ 마스크 : 285,198천원 · 1,000원×203,711명×10%×14일 = 285,198천원 ○ 손소독제 : 954,123천원 · 8,000원×8,519개소×1병×14일 = 954,128천원	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20년			향후투자	비고
			기정예산(A)	1회추경(B)	증감(B-A)		
계	1,239,326	0	0	1,239,326	1,239,326	0	신규
국 비	619,663	0	0	619,663	619,663	0	국고
도 비	412,696	0	0	412,696	412,696	0	예비비
시군비	206,967	0	0	206,967	206,967	0	
기 타	0	0	0	0	0	0	

* 보조율 : 국비 50%, 도비 33.3%, 시군비 16.7%

□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잔액 (C=A-B)	집행률 (D=B/A)	다음연도 이월액	비 고
2019년	-	-	-	-	-	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물품정수 취득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	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
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-	-	-	-	-	-	-	-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저출산보건복지실	사회복지과	사회복지팀	명완호 (행) 2660	김홍집 (행) 4251	장지용 (행) 2661

생활지원비 지원(성립전)	정책사업	국민기초생활보장(사회복지/기초생활보장)
	단위사업	기초생활보장 구축 및 지원
	세부사업	생활지원비 지원
	통 계 목	자치단체경상보조 (308-0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 목적 : 코로나-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도민들에게 생활지원비 지급
- 사업 위치 : 15개 시군
- 사업 기간 : 20.02.01.~20.12.31.(단년도 신규사업)
- 예 산 액 : **105,000천원**(국비)
- ※ 증감 사유 : 코로나-19로 입원·격리된 자에게 생활지원비 지급 신규 예산 편성
- 사 업 량 : 500명
- 사업시행방법 : 시군 시행
- 사업시행주체 : 15개 시군
- 사업 내용 : 생활지원비 지원(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지급)
 - 지원금액 : 14일이상 입원·격리자에 한하여 1개월분 지원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
지원액(단위:월/원)	454,900	774,700	1,002,400	1,230,000	1,457,500

※ 14일 미만자 : 일할 계산 지원 / 1개월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

- 지원근거 : 감염병예방법 70조의 4(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)

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(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,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산출액(총사업비 기준)	비 고
산출 기초	■ 생활지원비 지원 : 210,000천원(국비 105,000, 도비 69,930, 시군비 35,070) ○ 500명 × 10일 × 39,677원(4인가구 1일 기준) ≒ 210,000,000원	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20년			향후투자	비고
			기정예산(A)	1회추경(B)	증감(B-A)		
계	210,000	0	0	210,000	210,000	0	신규
국 비	105,000			105,000	105,000		국고
도 비	69,930			69,930	69,930		예비비
시군비	35,070			35,070	35,070		
기 타	0				0		

* 보조율 : 국비 50%, 도비 33.3%, 시군비 16.7%

□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잔액 (C=A-B)	집행률 (D=B/A)	다음연도 이월액	비 고
2019년	-	-	-	-	-	-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물품정수 취득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	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
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저출산보건복지실	사회복지과	생활보장팀	명완호 (행) 2660	임은영 (행) 4247	이선미 (행) 4245

보 건 정 책 과

보 건 정 책 과

1.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	20
2. 도 방역물품 및 홍보물품 지원	22
3. 보건소 방역물품 지원	24
4. 방역물품 및 장비 등 구입	26
5. 시군 방역장비 지원	28
6. 역학조사 수행인력 인건비	30
7. 방역물품(장비) 시군 지원	32
8. 충남의료원 운영비	34

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(성립전)	정책사업	질높은보건의료 서비스구축
	단위사업	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
	세부사업	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
	통 계 목	자치단체자본보조 (403-0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 목적 :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증 의심 환자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를 위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내 이동형 X-ray 설치 지원 필요
- 사업 위치 : 충청남도내 15개 시군 보건소
- 사업 기간 : 20. 02. 01 ~ 12. 31.(단년도 사업)
- 예 산 액 : 1,600,000천원
- 사 업 량 : 충청남도내 15개 시군(천안 2개소) 장비구입비 지원
- 사업시행방법 : 시군 시행
- 사업시행주체 : 도내 15개 시군
- 사업 내용 : 도내 15개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X-ray 장비구입비 지원
- 지원근거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1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

□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산출액(총사업비 기준)	비 고
산출 기초	■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: 1,600,000천원(100,000 × 16개소) ○ 천안시: 200,000천원 / ○ 공주시: 100,000천원 / ○ 보령시: 100,000천원 ○ 아산시: 100,000천원 / ○ 서산시: 100,000천원 / ○ 논산시: 100,000천원 ○ 계룡시: 100,000천원 / ○ 당진시: 100,000천원 / ○ 금산군: 100,000천원 ○ 부여군: 100,000천원 / ○ 서천군: 100,000천원 / ○ 청양군: 100,000천원 ○ 홍성군: 100,000천원 / ○ 예산군: 100,000천원 / ○ 태안군: 100,000천원	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20년			향후투자	비고
			기정예산(A)	1회추경(B)	증감(B-A)		
계	1,600,000	0	0	1,600,000	1,600,000	0	신규
국 비	1,600,000	0	0	1,600,000	1,600,000		국고
도 비	0				0		
시군비	0				0		
기 타	0				0		

* 보조율 : 국비 100%

□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잔액 (C=A-B)	집행률 (D=B/A)	다음연도 이월액	비 고
2019년	-	-	-	-	-	-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물품정수 취득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	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
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저출산보건복지실	보건정책과	보건행정팀	백현옥 (행) 2640	박미애 (행) 4291	강용화 (행) 2641

도 방역물품 및 홍보물품 지원(성립전)	정책사업	질높은보건의료 서비스구축
	단위사업	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
	세부사업	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
	통 계 목	재료비 (206-0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 목적 : 코로나19 대규모 확진발생 지속에 따른 긴급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및 홍보물품 구입 배부 및 지원
- 사업 위치 : 충청남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, 의료원
- 사업 기간 : 20. 02. 01. ~ 12. 31.(단년도 사업)
- 예 산 액 : **100,000천원(국비)**
- 사 업 량 : 방역물품 및 홍보물품 구입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충청남도
- 사업 내용 : 마스크, 손소독제, 소독약품 등 방역(홍보)물품 구입 및 배부
- 지원근거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1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

□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산출액(총사업비 기준)	비 고
산출 기초	■ 도 방역물품 및 홍보물품 지원 : 100,000천원 ○ 마스크, 손소독제, 소독약품 등 방역(홍보)물품 구입 및 배부 1식: 100,000천원	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20년			향후투자	비고
			기정예산(A)	1회추경(B)	증감(B-A)		
계	100,000	0	0	100,000	100,000	0	신규
국 비	100,000	0	0	100,000	100,000		특교
도 비	0				0		
시군비	0				0		
기 타	0				0		

* 보조율 : 국비 100%

□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잔액 (C=A-B)	집행률 (D=B/A)	다음연도 이월액	비 고
2019년				%		해당없음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물품정수 취득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	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
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저출산보건복지실	보건정책과	보건행정팀	백현옥 (행) 2640	박미애 (행) 4291	강용화 (행) 2641

보건소 방역물품 지원(성립전)	정책사업	질높은보건의료 서비스구축
	단위사업	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
	세부사업	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
	통 계 목	자치단체경상보조금 (308-0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 목적 : 코로나19 대규모 확진발생 지속에 따른 시군보건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
- 사업 위치 : 충청남도내 15개 시군
- 사업 기간 : 20. 02. 01. ~ 12. 31.(단년도 사업)
- 예 산 액 : 600,000천원(국비)
- 사 업 량 : 15개 시군 방역물품구입비 배부
- 사업시행방법 : 시군 시행
- 사업시행주체 : 도내 15개 시군
- 사업 내용 : 도내 15개 시군별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
- 지원근거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1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

□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산출액(총사업비 기준)	비 고
산출 기초	■ 보건소 방역물품 지원 : 600,000천원 ○ 천안시: 100,000천원 / ○ 공주시: 30,000천원 / ○ 보령시: 40,000천원 ○ 아산시: 120,000천원 / ○ 서산시: 40,000천원 / ○ 논산시: 35,000천원 ○ 계룡시: 20,000천원 / ○ 당진시: 40,000천원 / ○ 금산군: 20,000천원 ○ 부여군: 30,000천원 / ○ 서천군: 25,000천원 / ○ 청양군: 20,000천원 ○ 홍성군: 30,000천원 / ○ 예산군: 30,000천원 / ○ 태안군: 20,000천원	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20년			향후투자	비고
			기정예산(A)	1회추경(B)	증감(B-A)		
계	600,000	0	0	600,000	600,000	0	신규
국 비	600,000	0	0	600,000	600,000		특교
도 비	0				0		
시군비	0				0		
기 타	0				0		

* 보조율 : 국비 100%

□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잔액 (C=A-B)	집행률 (D=B/A)	다음연도 이월액	비 고
2019년				%		해당없음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물품정수 취득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	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
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저출산보전복지실	보건정책과	보건행정팀	백현옥 (행) 2640	박미애 (행) 4291	강용화 (행) 2641

방역물품 및 장비 등 구입(성립전)	정책사업	질높은보건의료 서비스구축
	단위사업	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
	세부사업	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(2차)
	통 계 목	재료비 (206-0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 목적 : 코로나19 감염병 심각단계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및 배부
- 사업 위치 : 충청남도내 시군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, 의료원
- 사업 기간 : 20. 01. 01. ~ 12. 31.(단년도 사업)
- 예 산 액 : 355,000천원(국비)
- 사 업 량 : 방역물품 및 장비 구입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충청남도
- 사업 내용 : 마스크, 손소독제,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(장비) 구입 및 배부
- 지원근거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1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

□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산출액(총사업비 기준)	비 고
산출 기초	■ 방역물품 및 장비 등 구입 : 355,000천원 ○ 마스크, 손소독제,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(장비) 구입 및 배부 1식: 355,000천원	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20년			향후투자	비고
			기정예산(A)	1회추경(B)	증감(B-A)		
계	355,000	0	0	355,000	355,000	0	신규
국 비	355,000	0	0	355,000	355,000		특교
도 비	0				0		
시군비	0				0		
기 타	0				0		

* 보조율 : 국비 100%

□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잔액 (C=A-B)	집행률 (D=B/A)	다음연도 이월액	비 고
2019년				%		해당없음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물품정수 취득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	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
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저출산보전복지실	보건정책과	보건행정팀	백현옥 (행) 2640	박미애 (행) 4291	강용화 (행) 2641

시군 방역장비 지원(성립전)	정책사업	질높은보건의료 서비스구축
	단위사업	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
	세부사업	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(2차)
	통 계 목	자치단체자본보조 (403-01)

☐ 사업개요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☐ 산출 근거

구 분	산출액(총사업비 기준)	비 고
산출 기초	■ 시군 방역장비 지원 : 495,000천원 ○ 보령시: 70,000천원 / ○ 아산시: 74,000천원 / ○ 서산시: 36,000천원 ○ 당진시: 48,000천원 / ○ 금산군: 20,000천원 / ○ 부여군: 49,000천원 ○ 서천군: 45,000천원 / ○ 청양군: 20,000천원 / ○ 홍성군: 63,000천원 ○ 예산군: 70,000천원	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20년			향후투자	비고
			기정예산(A)	1회추경(B)	증감(B-A)		
계	495,000	0	0	495,000	495,000	0	신규
국 비	495,000	0	0	495,000	495,000		특교
도 비	0				0		
시군비	0				0		
기 타	0				0		

* 보조율 : 국비 100%, 도비 00%, 시군비 00%, 기타 00%

□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잔액 (C=A-B)	집행률 (D=B/A)	다음연도 이월액	비 고
2019년				%		해당없음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물품정수 취득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	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
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저출산보전복지실	보건정책과	보건행정팀	백현옥 (행) 2640	박미애 (행) 4291	강용화 (행) 2641

역학조사 수행인력 인건비(성립전)	정책사업	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구축
	단위사업	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
	세부사업	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(3차)
	통 계 목	기타직보수 (101-02)

□ 사업개요

- 사업 목적 : 공중보건 의사 역학조사관 인력보강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대응
- 사업 위치 : 충청남도
- 사업 기간 : 2020.02.06.~04.09.(단년도 사업)
- 예 산 액 : 52,000천원(국비)
 - ※ 증감 사유 :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의사 도 역학조사관 확충 수당 편성
- 사 업 량 : 9명(도 역학조사관 1, 한시적 임명역학조사관 8)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시행
- 사업시행주체 : 충청남도
- 사업 내용 : 코로나19 감염증이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확진환자 및 접촉자, 유증상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역학조사 수행 인력보강 필요
 - 감염병예방법 제60조3에 따라 시군 공보의를 도 역학조사관으로 한시적 임명(8명)
 - * 도 역학조사관 현황 : 10명(도 역학조사관1, 시군 공보의8, 지원단1)
- 지원근거 : 코로나-19대응관련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지침(Ⅱ판)

◇ 감염병예방법 제60조3(한시적 종사명령)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의 유행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 대상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◇ 코로나-19대응관련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지침(Ⅱ판)

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파견을 받은 공중보건 의사에 대해서는 위에서 정한 '추가 업무활동장려금'(평일 4만5천원, 토·일·공휴일 9만원)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□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산출액(총사업비 기준)	비 고
산출 기초	■ 역학조사 수행인력 인건비 : 52,000천원 ○ 공중보건 의사 9명*64일*90,000원 * 초과근무, 업무강도 등을 고려 수당 수당 상향지급(1일 90,000원)	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20년			향후투자	비고
			기정예산(A)	1회추경(B)	증감(B-A)		
계	52,000	0	0	52,000	52,000	0	신규
국 비	52,000			52,000	52,000		특교
도 비	0				0		
시군비	0				0		
기 타	0				0		

* 보조율 : 국비 100%(특교)

□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잔액 (C=A-B)	집행률 (D=B/A)	다음연도 이월액	비 고
2019년				%		해당없음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물품정수 취득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	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
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저출산보전복지실	보건정책과	보건행정팀	백현옥 (행) 2640	박미애 (행) 4291	정다화 (행) 4302

방역물품(장비) 시군 지원(성립전)	정책사업	질높은보건의료 서비스구축
	단위사업	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
	세부사업	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(3차)
	통 계 목	자치단체경상보조금 (308-0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 목적 : 코로나19 대규모 확진발생 지속에 따른 시군보건소 방역물품(장비) 구입비 지원
- 사업 위치 : 충청남도내 15개 시군
- 사업 기간 : 20. 02. 01. ~ 12. 31.
- 예 산 액 : 290,000천원(국비)
- 사 업 량 : 15개 시군 방역물품(장비) 구입비 배부
- 사업시행방법 : 시군 시행
- 사업시행주체 : 도내 15개 시군
- 사업 내용 : 마스크, 손소독제 등 도내 15개 시군별 방역물품(장비) 구입비 지원
- 지원근거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1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

□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산출액(총사업비 기준)	비 고
산출 기초	■ 방역물품(장비) 시군 지원 : 290,000천원 ○ 천안시: 80,000천원 / ○ 공주시: 15,000천원 / ○ 보령시: 15,000천원 ○ 아산시: 15,000천원 / ○ 서산시: 15,000천원 / ○ 논산시: 15,000천원 ○ 계룡시: 15,000천원 / ○ 당진시: 15,000천원 / ○ 금산군: 15,000천원 ○ 부여군: 15,000천원 / ○ 서천군: 15,000천원 / ○ 청양군: 15,000천원 ○ 홍성군: 15,000천원 / ○ 예산군: 15,000천원 / ○ 태안군: 15,000천원	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20년			향후투자	비고
			기정예산(A)	1회추경(B)	증감(B-A)		
계	290,000	0	0	290,000	290,000	0	신규
국 비	290,000	0	0	290,000	290,000		특교
도 비	0				0		
시군비	0				0		
기 타	0				0		

* 보조율 : 국비 100%,

□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잔액 (C=A-B)	집행률 (D=B/A)	다음연도 이월액	비 고
2019년				%		해당없음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물품정수 취득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	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
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저출산보전복지실	보건정책과	보건행정팀	백현옥 (행) 2640	박미애 (행) 4291	강용화 (행) 2641

충남의료원 운영비(성립전)	정책사업	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구축
	단위사업	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
	세부사업	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(3차)
	통 계 목	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(308-10)

□ 사업개요

- 사업 목적 : 코로나19 대응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의료원 진료 운영비 지원으로 효율적 운영
- 사업 위치 : 천안의료원 (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) /공주의료원 (충남 공주시 무령로77) 서산의료원(충남 서산시 중앙로 149)/홍성의료원(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)
- 사업 기간 : 2020.1.1.~2020.12.31.(신규사업)
- 예 산 액 : **500,000천원(국비)**
※ 증감 사유 :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대응 감염병관리기관(충남 4개 의료원)의 진료 운영비임
- 사 업 량 : 충청남도 의료원 4개소
- 사업시행방법 : 공공기관 대행
- 사업시행주체 : 천안·공주·서산·홍성의료원
- 사업 내용 :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라 충남 4개 의료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,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
- 지원근거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(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.

□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산출액(총사업비 기준)	비 고
산출 기초	■ 코로나19 대응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의료원 진료 운영비 지원 : 금500,000천원 ○ 천안의료원 200,000천원 + 공주·서산·홍성의료원 각100,000천원 ※ 천안의료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한 천안시에 소재하여 100,000천원 추가 지원	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20년			향후투자	비고
			기정예산(A)	1회추경(B)	증감(B-A)		
계	500,000	0	0	500,000	500,000	0	신규
국 비	500,000			500,000	500,000		특교
도 비	0				0		
시군비	0				0		
기 타	0				0		

* 보조율 : 국비 100%

□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잔액 (C=A-B)	집행률 (D=B/A)	다음연도 이월액	비 고
2019년	-	-	-	-	-	해당없음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물품정수 취득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	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
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저출산보건복지실	보건정책과	공공의료팀	백현옥 (행)2640	성만제 (행)4295	유현균 (행)2645

2. 문 화 체 육 관 광 국

충 남 도 서 관

충남도서관

1. U-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 42
2.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44

U-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(성립전)	정책사업	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
	단위사업	도서관 육성지원
	세부사업	U-도서관서비스 확대지원
	통 계 목	자치단체 자본보조 (403-0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 목적 : 국민의 독서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도서관의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24시간 무인 대출반납서비스 구축
- 사업 위치 : 논산시
- 사업 기간 : 2020. 1. 1. ~ 2020. 12. 31.
- 예 산 액 : 60,000천원
 - ※ 증감 사유 :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
- 사 업 량 : 무인 대출반납서비스 시스템 구축 1식
- 사업시행방법 : 시군시행
- 사업시행주체 : 충청남도 논산시
- 사업 내용 : 24시간 무인 대출반납서비스 시스템 구축
- 지원 근거 : 도서관법 제43조

도서관법 제43조(도서관의 책무)

② 도서관은 장애인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(이하 “지식정보 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도서관자료의 확충,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
2. 교육·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
3.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,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
4.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
5.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□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산출액(총사업비 기준)	비 고
산출 기초	■ U-도서관서비스 구축지원 ○ U-도서관 시스템 구입 : 100,000천원 × 1대 = 100,000천원 ○ 운영환경구축 : 20,000천원 × 1식 = 20,000천원	
총사업비	120,000천원(국비 60,000 시비 60,000)	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20년			향후투자	비고
			기정예산(A)	1회추경(B)	증감(B-A)		
계	120,000	0	0	120,000	120,000	0	
국 비	60,000	0	0	60,000	60,000	0	국고
도 비	0	0	0	0	0	0	
시군비	60,000	0	0	60,000	60,000	0	
기 타	0		0	0	0	0	

* 보조율 : 국비 50%, 시군비 50%

□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잔액 (C=A-B)	집행률 (D=B/A)	다음연도 이월액	비 고
2019년	121,500	117,187	4,313	96.5%	0	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융역비 사전심사	물품정수 취득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	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
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2019년 (2020~2024)	-	-	-	-	-	-	-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문화체육관광국	충남도서관	도서관정책팀	나병준 (행) 8001	이채구 (행) 8012	이미수 (행) 8044

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(성립전)	정책사업	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
	단위사업	도서관 육성지원
	세부사업	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
	통 계 목	자치단체 경상보조 (308-0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 목적 : 국외에서 이주한 외국인과 내국인간의 상호 문화 존중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도내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서비스 활성화
- 사업 위치 : 공주시, 아산시, 당진시, 금산군
- 사업 기간 : 2020. 1. 1. ~ 2020. 12. 31.
- 예 산 액 : 12,596천원
※ 증감 사유 :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
- 사 업 량 :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
- 사업시행방법 : 시군시행
- 사업시행주체 : 4개 시군, 4개 공공도서관
- 사업 내용 :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- 지원 근거 : 도서관법 제44조

도서관법 제44조(지식정보격차 해소지원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산출액(총사업비 기준)	비 고
산출 기초	■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: 17,995천원 ○ 공주시 : 3,600천원 - 강사료 : 90,000원 × 30회 = 2,700천원 - 운영관련 재료비 : 900,000원 × 1식 = 900천원 ○ 아산시 : 5,680천원 - 홍보비 : 600,000원 × 1식 = 600천원 - 운영관련 재료비 : 440,000원 × 2식 = 880천원 - 공 연 : 1,000,000원 × 1식 = 1,000천원 - 강사비 : 80,000원 × 40회 = 3,200천원 ○ 당진시 : 5,715천원 - 강사료 : 800,000원 × 5회 = 4,000천원 - 교재비 : 200,000원 × 5회 = 1,000천원 - 홍보비 : 40,000원 × 5회 = 200천원 - 재료비 : 103,000원 × 5회 = 515천원	

산출 기초	○ 금산군 : 3,000천원 - 강 사 료 : 80,000원 × 2강좌 × 18회 = 2,880천원 - 운영재료비 : 120,000원 × 1식 = 120천원	
총사업비	17,995천원(국비 12,596 시군비 5,399)	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20년			향후투자	비고
			기정예산(A)	1회추경(B)	증감(B-A)		
계	17,995	0	0	17,995	17,995	0	
국 비	12,596	0	0	12,596	12,596	0	국고
도 비	0	0	0	0	0	0	
시군비	5,399	0	0	5,399	5,399	0	
기 타	0		0	0	0	0	

* 보조율 : 국비 70%, 시군비 30%

□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잔액 (C=A-B)	집행률 (D=B/A)	다음연도 이월액	비 고
2019년	16,160	16,160	0	100%	0	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물품정수 취득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	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
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2019년 (2020~2024)	-	-	-	-	-	-	-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문화체육관광국	충남도서관	도서관정책팀	나병준 (행) 8001	이채구 (행) 8012	이미수 (행) 8044

